

범죄보도를 어떻게 쓸 것인가

新井直之

일본창서대학 교수

이 글은 일본에서 발행되는 월간지 「매스컴시민」 (1990년 2월호)에 게재된 논문을 번역한 것이다.....편집자 주

I

(1) 범죄보도는 저널리즘의 초창기부터 이미 존재했다. 미국의 경우 독립 이전의 영국식민지시대인 1770년 「코네티컷트 저널」 9월 28일자에 『최근의 무서운 연독살인』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 이유는 범죄사건이 일상적으로 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뉴스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범죄사건보도가 다른 보도에 비해 한층 더 센세이셔널하게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부교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 왔다는 사실도 큰 이유로 되어 있다.

센세이셔널리즘이란 대중의 원시적 본능을 자극하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흥미본위의 보도를 말한다.

(2) 센세이셔널리즘은 매스미디어의 상업주의에 기인한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매스미디어는 일본의 NHK와 같은 극히 적은 예외를 빼고는 영리기업으로 되어 있으며 가급적 많은 독자·시청자를 획득하는 것을 필수조건으로 삼고 있다 센세이셔널리즘은 대중획득을 위해서는 극히 유효한 수단으로 간주된다. 센세이셔널하게 보도하는 편이 잘 팔리고 시청률이 올라간다. 미국 대중지의 선구라고 할 「더선」은 1833년 9월 3일자 창간호에서 거의 미세한 폭력사건 9건의 형사재판이라든가 플로리다, 펜실바니아, 오하이오주에서의 살인사건뉴스를 게재했다. 이러한 기사들은 이 신문의 창립자인 벤자민 H. 데이가가 이곳 저곳에서 사서 모은 여러 신문에서 전날 밤 자신이 직접 개작하여 전제한 것들이다.

(3) 매스미디어에 의한 인권침해는 범죄보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침해현상으로는 과장, 왜곡, 윤색, 프라이버시침해, 예측에 의한 보도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사실이 아직 명확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써버려도 어디에서도 비판이나 진정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애매한 정보나 추측이라도 재미있고 우스꽝스럽게 쓰는 편이 득이라고 생각하는 저널리즘 내부의 속성도 있다. 그 밖에 취재의 방법, 태도 등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피의자의 가족을 집요하게 뒤쫓아 다닌다든가 사건관련인물의 자택을 밤낮으로 며칠씩 포위하여 지키는 따위가 그러한 예들이다.

(4) 그렇다면 왜 범죄보도에 인권침해가 많은가. 그 첫째 이유는 센세이셔널리즘을 일본인 대중들이 좋아하고 있다는데 있다. 「일억총탐정」이라든가 병적일 정도로 남의 일을 엿보려는 「포커스현상」 등으로 불리우는 민중의 심리상황이 센세이셔널리즘의 밑바닥에 깔려 있다. 한편으로 엿보는 취미를 강하게 갖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가해자들

규탄하는 정의파인 체 하고 브라운관 저편의 범인을 가차없이 집단 린치하는 그러한 (집단학대심리)」와의 복합된 심리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프랑스의 한 매스컴 학자의 말처럼 「매스미디어는 각기 그 나라의 국민에게 어울리게 존재한다」고 하겠다. 다만 영웅숭배와 집단학대심리가 나치스의 지배를 지탱케 한 일이나 프라이버시가 완전히 무시된 것이 독일이었던 일본이었던 제 2 차 세계대전 중의 파시즘의 시대였다고 하는 사실은 지금 새삼스럽게 상기되어져야만 한다. 센세이셔널리즘을 떠받치고 있는 지금의 일본인의 대중심리는 극히 위험하다. (5) 두번째 이유는 특종의식이라는 저널리스트의 심리다. 이 특종의식은 단순히 「특종을 하고 싶다」는 것이 아니고 「특종으로 동업타사와 세상을 놀라게 하고 싶다」는 데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이것 또한 센세이셔널리즘임에 틀림 없다. 특종 그 자체는 저널리즘에 있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저널리스트의 활동을 받쳐주고 있는 이러한 심리상태를 무시하거나 경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 사실을 사실로서뿐만 아니라 사실을 조작하는 일을 하기 쉽다. 요미우리신문이 1989년 8월 17일자 석간에서 유여연속살인사건을 보도하면서 「산속의 오두막집 아지트 발견」이라고 허보한 사건은 기자의 특종의식=센세이셔널리즘이 밑바닥에 깔려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요미우리」의 「아지트」 허보에 대해 동사 사회부장도 「과잉특종의식이 수사책임자에 대한 사실확인이라는 가장 중요한 과정을 소홀하게 만들었다」고 허보원인을 분석했다.

(6) 세번째 이유는 저널리즘의 범죄사건 취재방법이 기본적으로 제 2 차 세계대전 이전의 1 일형사소송법시대때와 같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저널리스트들은 하나의 사건을 다작적으로 취재할 것. 대립하는 의견이 상충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쌍방의 의견을 보도할 것 등의 보도원칙을 신입교육 때부터 주입받는다. 그러나 범죄보도에서만은 이러한 원칙이 머리속에서 사라져 버리고 만다. 피해자, 피의자의 쌍방으로부터 취재하는 일은 거의 없다. 전적으로 경찰의 조서만이 취재대상이 되며 경찰의 수사내용에 대해서만 취재를 과열시킨다. 이는 저널리즘이 단순히 경찰의 「행위」를 보도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널리스트가 경찰측에 서서 경찰의 「사상」과 일체화시키는 일을 하기 쉽게 된다. 「원포상에 뻥뻥스러운 웃음」, 「여전히 입을 열지 않다」, 「수사진 끈기 있는 승리」 등의 표현은 피의자를 진범인으로 단정, 경찰과 동일한 시각에서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7) 또한 비록 보도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며 라도 「진실이라고 오신하고 그 오신을 함에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명예훼손에 관해 면책된다는 판례(일본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널리즘은 한층 더 경찰쪽에 기울기 쉽게 된다.

(8) 그러나 이러한 때에도 개개의 저널리스트는 「제 4의 권력」으로서 회사회적인 행위는 폭로하여 펜으로 고발해야 한다는 월광이면적정의감, 사회의 목탁의식으로 이를 정당화하려 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법에 의거하지 않은 사형이며 「신문재판」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9) 경찰, 검찰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다는 것은 권력에 의한 정보조작→여론조작에 이용되기 쉽다. 권력은 항상 여론을 전적으로 무시하고는 통치를 해나갈 수가 없다. 여론을 컨트롤하는 방법에는 「억압」과 「조작」이 있다 「억압」이란 권력쪽에 불리한 사실,

의견을 봉쇄하려는 것이며, 「조작」이란 거꾸로 어떤 사실·의견을 앞질러 공표케 하는 방법 등으로 권력쪽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나가려는 것이다. 일본에서의 러쿠르트사건에 있어 동경지검의 특수부가 저널리즘의 특종 보도나 취조내용보도, 수사방침에 관한 예고보도가 싫어 청사출을 금지하는 취재부를 했는데 이러한 처분을 받은 신문사가 8개사나 되었다는 사실은 「억압」의 예에 속한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조작」의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졌다. 권력에 의한 홍보과다 또는 과소는 다 함께 저널리즘에 대한 「조작」을 이하게 한다. 홍보의 과다는 물 홍보에 따르는 보도를 만들지만 홍보의 과소도 또한 형사의 자택을 밤낮으로 드나들며 그곳에서 얻어낸 단편적인 정보를 근거로 대대적으로 쓰게 됨으로써 여론조작의 일익을 맡게 되는 결과가 되기도 한다.

권력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사정에 따라 고의적으로 거짓정보를 저널리즘에 흘려 일조차 있다.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은 1957년 10월 18일자 조간에서 동경지검이 수사중인 매춘방지법안을 둘러싼 오직사건에 관해 두 국회의원의 수뢰용의 농후해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큰 제목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사실무근이었으며 기사를 쓴 유능한 사회부 기자는 명예훼손으로 체포되고 사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동경지검이 정보가 자주 「요미우리신문」에 새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근원을 찾아내기 위해 일부러 거짓정보를 법무성에 흘렸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담당검사였고 후에 검찰총장까지 지낸 체영변씨가 사후에 공표한 수기에 의해 처음으로 밝혀졌다.

(10) 일본에서는 경찰에 의지하지 않고 저널리즘이 의식적 주체적으로 독자취재를 행하는 것을 통틀어 「조사보도」로 부르고 있으며 이를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풍조가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조사보도」(Investigative Reporting)는 「그 대상이 정부의 부정, 세금의 낭비, 조직적 범죄 등에 제한되어 있다. 즉 「워싱턴 포스트」에 의한 워터게이트사건추적은 「조사보도」이지만 재인에 의한 단순한 범죄를 저널리즘이 독자적으로 추적하는 것은 「조사보도」라고 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요미우리신문」 대돈본사판 1989년 10월 16일자 조간은 강도살인용의로 대판부경에 의해 지명수배된 남자를 일부러 본사에서 흐늘 루루에 파견된 기자단이 잠복 끝에 4일만에 찾아내 미당국과 일본총영사관에 연락, 체포하게 한 것을 1면 톱기사로 보도한 것을 비롯, 제2사회면과 사회면의 태반을 이 기사로 메웠다. 이 정도의 일을 신개사가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11) 인권침해가 많은 네번째 이유로는 저널리즘의 보도가 예술작품의 제작과는 달리 신문이든 방송이든 잡지든 간에 언제나 마감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제약을 갖고 있다는 점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저널리스트는 마음에 흡족한 취재는 허용되지 않으며 마감시간 때까지 입수한 정보만 가지고라도 어쨌든 보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숙명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불충분한 취재는 결과적으로 인권침해보도와 연결되는 것이다.

II

(1) 지금까지의 저널리즘은 언론, 표현의 자유의 확대를 추구, 그 자유의 억압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을 최대의 사명으로 해왔다. 이러한 가치관에서 본다면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저널리즘에 어떤 종류의 「자제」를 구하는 일은 현역 저널리스트들에게 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종의 「제한」이라는 감을 줄 것이 틀림 없다. 1984년 5월에 열린 일본신문협회의 지면심사전국간담회에서 「독자의 요구에 응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며 지나치게 어렵게 생각한 나머지신문이 보도하지 않는 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새로운 조사보 도에서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취재를 하고 가령 피소된다 하더라도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의연한 태도로 그 판단은 독자에게 맡긴다는 그러한 자세가 요청되고 있다」는 등의 발언들이 잇따른 것도 현역들의 반발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도 보도에 의한 인권침해가 금후 더 늘어날 것이라는예상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언론·표현의 자유」와 「인권」과의 관계가 대항적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저널리즘의 언론·표현의 자유는 민중 한사람 한사람이 갖는 언론·표현의 자유에 준해서 행사되는 것으로 결코 그 이상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며 물론 그 이하도 아니다. 개개의 저널리스트의 언론·표현의 자유는 민중 한사람 한사람의 그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저널리즘이 민중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것을 무시하면 저널리즘 그 자체의 존립기반을 잃게 될 것은 뻔한 일이다.

(2) 저널리즘의 인권존중을 매스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의 하나로 생각하는 입장도 있다. 그러나 인권존중의 요청과 「사회적 책임」과는 별개의 이질적인 것이다. 「매스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이란 매스미디어에 의한 언론·표현의 과점을 전제로 하여 그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과점체뺄의 「책임」감의 자각을 강제하고 자율규제와 저널리스트의 전문화를 요구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권존중의 요청은 언론·표현의 과점상황과는 관계가 없으며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어떠한 상황 아래서든 모든 저널리즘의 기본적인 책무인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에 의한 인권침해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신문지면의 심사를 맡고 있는 일본신문협회 심사실의 한 좌담회에서 조차 유여연속살인사건의 보도에 대해 「과잉보도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는 사회자의 발언에 대해 「여름철 불경기 때이기도 했는데 그 정도는 허용범위내에 드는 것이 아닌가. 전후사에 기록될 범죄사건이라는 의미에서도 필요했다고 생각한다. 「그 정도의 사건이니까 다소의 문제는 나무랄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 정도의 기세는 있는 편이 낫지 않은가」는 등등의 의견이 나온 것을 보더라도 아직도 과잉보도나 「다소의」 인권침해는 허용하는 분위기가 매스미디어 측에 강하게 도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과는 반비례하여 독자의 신문에 대한 신뢰도는 해마다 내려가고 있다. 일본신문협회연구소는 1979년 이래 8개 항목에 대해 신문신뢰도조사를 계속해 오고 있는데 1989년 4월초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1개 항목을 제외한 7개 항목에서 조사 개시 이래 신뢰도의 최저를 기록했다. 그 가운데 「신문은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권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을 보면 전회(1987년) 51%였던 긍정적 평가가 44%로 떨어졌으며 「뭐라고 말할 수 없다」는 대답이 24%에서 32%로 늘어나고 있다. 종래 보도에 의한 인권침해는 주간지나 민방의 와이드쇼 등에서나 있는 일이며 신문은 비교적 인권을 지켜주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었다. 그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그렇지 만도 않다고

생각하게끔 되었다. 이것은 신문뿐만 아니라 매스미디어 전반에 대한 신뢰도의 저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만 할 것이다.

III

앞으로 범죄보도는 어떻게 써야만 할 것인가. 이를 저널리즘·저널리스트의 입장과 독자·시청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로 한다.

1. 저널리즘·저널리스트

(1) 완전한 사책주의에 투철할 것이며 과장·왜곡·윤색·예단을 가진 보통 등을 일체배척해야 한다. 물론 추측이나 앞질러가는 보도도 해서는 안된다. 철저한 취재만이 범죄보도의 기초이다. 요미우리신문사 법무실에 들어오는 문제보도에서는 취재불족에 원인이 있는 트러블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보도되는 쪽의 불이익을 항상 의식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보도되는 쪽이란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나 그 가족까지도 포함한다.

유여연속살인사건에서 범인의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유족의 상을 기자단에서 구하곤 했는데 어떤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도 우리들의 지금 기분은 알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라는 대꾸에 기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섰다고 한다 이러한 취재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이다.

(3) 경찰·검찰 등 권력측의 발표 또는 흘러나오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보도할 것이 아니라 피의자나 관계자에 대해서도 취재하여 다면적인 보도를 함과 동시에 진실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에서는 경찰담당의 기자들이 경찰서나 보안관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로그」(log, 수사보고내용을 간추린 것)를 열람하는 일로 취재를 시작하는데 공정한 기자들은 「희생자, 체포자, 그들의 변호사와 접촉하여 모든 측면에서 사건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려고 노력한다.

4. 조사를 받거나 체포되거나 또는 기소된 사람들의 주장을 어떠한 방법으로 취재하여 기사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오늘날 일본의 범죄보통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이다. 특히 유치·구류된 사람들에 대해 저널리스트의 면회가 금지되고 있는 현재 그것은 극히 어려운 문제로 되어 있다. 이 면회금지에 대해서는 현재 법연에서 다투어 지고 있지만 하루빨리 이 조치가 해제되도록 저널리즘측에서도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4) 불충분한 수사, 혹은 불당·불법한 수사를 폭로하여 그 비리를 비판해야만 한다. 또한 경찰발표에 따라 피의자가 「자백했다」고 그대로 대대적인 보도를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것을 마치 범인으로 확정된 것 같은 인상을 독자·시청자에게 주게 된다. 피의자는 자백만으로 유죄가 되지 않는다. ① 자백이 객관적 증거와 합치하고 ② 자백속에 수사관도 모르고 있는 사실이 내포되어 있음이 입증되어야만 비로소 자백에 신용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 된다. 1989년 9월 동경가정법원에서 3명의 소년에게 무죄의 심판이 내려진 모구살인사건에서는 자백에 중점을 둔 수사가 엉터리라고 비판받았다. 유자위속살인사건에서 증거도 없고 내용에 새로운 사실도 없는 상신서를 발표나 흘려주는 정보 그대로를 보도하여

피의자를 연속살인의 범인인 것처럼 증거도 없는 단계에서 일반에게 인상을 주게 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5) 하지만 잡다한 조건이라든가 마감시간을 갖고 있다는 저널리즘의 숙명에서 오는 짧은시간내의 취재 등에 의해 불충분한 취재나 보도밖에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를 보아 때로는 과거의 보도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검증결과 과거의 보도에 잘못이나 불충분한 점이 발견되면 즉각 수정하거나 정정보도를 해야만 한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1980년에 게재한 마약중독소년에 대한 르포르 1981년에 풀리처상을 받았으나 그 기사가 허보로 판명되자 상을 사회함과 함께 3일간의 사내검증을 실시한 후 1만 3천 어에 달하는 조사보고를 3페이지 반에 걸쳐 전문을 게재했다. 또 「월 스트리트 저널」의 주식담당기자가 자신이 입수한 정보를 증권맨에게 누설하여 이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동지 1984년 4월 2일자 1면 톱에 상세한 사실경위를 게재했다. 이와 같이 잘못이 발견되었을 때 지면의 한쪽구석에 자그마한 정정 기사를 게재하는 데 그치지 말고 두번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전한다면 독자 · 시청자의 납득을 얻게 될 것이며 한편으로는 저널리즘측으로서도 자계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해당매체의 평가를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뚝뚝한 태도로 성가가 올라가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두 신문이 입증하고 있다.

「아사히신문」 1989년 10월 9일자 조간은 산호손상사진허보건에 대해 2면에 걸쳐 경과를 보도함과 함께 4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이 보고서에 대한 세사람의 의견을 게재했다 이같은 조치는 일본의 신문으로서의 최초의 일로 높이 평가되지만 위의 미국의 2개지의 경우와는 달리 4월 20일자 석간에 문제의 사진이 게재된 날로부터 너무나 많은 시일이 경과되었으며 조사보고에도 계속 불분명한 점이 있었고 사태를 마무리하는 대응도 불충분했다는 짐 등 내용면에서 미흡했었다.

(6) 범죄보도에서는 실명원칙을 지양하고 익명보도를 원칙으로 해야만 한다 이미 스웨덴에서는 1974년 이래 실시되고 있는데 핀란드에서도 1968년 이래 스웨덴만큼 못하지만 익명보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다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모든 범죄보도에서 익명으로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 자치단체의 고관,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 기업의 중역 등의 범죄는 실명으로 해야만 한다. 록히드사건, 리쿠르트사건과 같은 범죄는 익명으로 해서는 안된다. 둘째, 익명보도를 하더라도 취재를 할 때에는 필히 실명을 알아두어야만 한다. 최근 경찰이 발표를 하면서 관계자의 이름을 숨기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는데 이는 저널리즘에 의한 독자취재를 봉쇄하는 것으로 도리어 인권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

(7) 범죄보도를 가급적 줄여야만 한다. 미국에서는 종래 일본에서와 같이 신입기자에게 경찰을 담당케 하는 외에 범죄보도의 전문기자(Crime Specialist)를 배치하여 비교적 자유스럽게 범죄에 관해 조사보도출 시키는 등 범죄보도에 비중을 두었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부터 타블로이드지를 제외한 일반지에서는 범죄보도를 줄이고 공중납치사건이라든가 연속살인 등 특별한 배경을 갖는 사건에 한정해서 보도하도록 되었다 「워싱턴 포스트」지의 경찰담당은 경찰본부에 한 사람 뿐이며 심야에서 새벽까지는 본사에서 경찰무선을 방수(무단으로 엿듣는 것)하고 있을 뿐이다. 「보스톤 글로브」는

경찰무선의 방수뿐이며 경찰담당기자를 폐지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① 경찰발표를 그대로 보도하는 것에 의문이 생겼다. ② 피의자측을 취재하는 일이나 공정한 보도를 하는 일이 어렵게 되었다. ③ 따라서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등으로 피소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 센세이셔널리즘을 상품으로 하고 있는 옐로우 저널리즘은 미국의 산물이며 따라서 미국인의 심리도 센세이셔널을 애호했을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저널리즘이 변하려고 하면 변할 수있는 것이다. 저널리즘이 대중심리를 「니즈(Needs)로 부르며 거기에 매달릴 것인지 아니면 인권을 존중해야만 한다고 생각할 것인지. 문제는 저널리스트의 결의에 달려 있다.

2. 독자 · 시청자

(1) 대체적으로 자유나 인권의 침해에 대한 투쟁은 가급적 빨리, 가급적 널리, 그 침해의 사실을 알리는 일로부터 시작한다 보도에 의한 인권침해의 경우도 그것을 먼저 당사자인매스미디어에, 그리고 어떤 수만으로도 널리 일반의 민중들에게 알려야만 한다. 미디어측이 이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로부터 비판이라든가 항의의 행동이 시작된다.

(2) 그 매스미디어에 대한 민중으로부터의 진정, 비판 등을 널리 받아들이고, 사정을 조사하여 그것이 사실일 때 당해 미디어에 대해정정이나 사죄 등의 조치를 권고하는 권한을 갖는 기관을 설치해야만 한다. 1916년에 설립된 스웨덴의 신개평의회, 1967년에 생긴 프레스 옴부즈만 같은 제도는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다. 신문평의회나 프레스 옴부즈만 제도는 국가적인 규모로 설립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전국적인 기관이 설립되기 이전에 각 미디어가 독자적으로 설치할 수도 있다. 앞에서 언급되었던 「워싱턴 포스트」의 조사보고는 동사의 옴부즈만에 의해 작성된 것이었다. 또한 대단위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평의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경찰발표 등에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지역의 모든 신문사의 지국, 모든 방송국에 각각 항의한다고 하면 대단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럴때 그 지역의 평의회에 한번에 신청하여 해결을 시도할 수 있다. 이 같은 지역평의회가 설치된 후 전국적인 평의회가 설립되는 편이 더 실제적일 수도 있다.